##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96

발의연월일: 2024. 10. 24.

발 의 자:김상훈·김선교·김소희

권영세 • 이헌승 • 주호영

엄태영 · 이달희 · 고동진

김석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은 조합법인은 그 감면분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중 농·수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반면,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는 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가 농어민, 서민 등경제적 약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농·수산협동조합 등과 동일하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차별을 두고 있어 조합법인 간의 조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하여도 농·수산협동조합 등과 동일하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두어 조합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및 새 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4조(비과세)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     |                    |  |  |
| 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                    |  |  |
| 다.                  |                    |  |  |
| 1. • 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
| <u>&lt;신 설&gt;</u>  |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72 |  |  |
|                     | 조제1항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  |  |
|                     |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  |  |
| 3. ~ 12. (생 략)      | 3. ~ 12. (현행과 같음)  |  |  |